



国内外審判判例

<XI>

編輯室

國 内 事 件

〈大法院判例 第3部 判決〉

特許無効判例

裁 判 長 : 大法院判事 이 일 규
關與判事 : " 홍 순 염
" " 양 명 호
" " 강 안 회

事 件 : 75후24, 特許無効

上 告 人(審判請求人) : 1. 강대경 2. 구기훈 3. 전영길 4. 전성남
위 審判請求人暨 訴訟代理人 : 辩理士 田 喬 恒

被上告人(審判請求人) : 유 동 수

위 訴訟代理人 : 辩理士 서 기 원

原 審 決 : 特許局 1975. 5. 26字 74抗告審判 361 審決

主 文 :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們의 負擔으로 한다.

理 由 : 審判請求人們의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 第1. 2點을 함께 判斷한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發明한 本件 特許는 첫째, 고무판을任意로 꽂모양으로裁斷한 다음 이것들을 2重으로上下가一致되게 重疊하여 꽂잎의 中央部와 中心部를 壓刀가 달린 브레스로 壓捺하여 切斷함과 同時に 고무의 接着性에 의하여 그 切斷面이 서로 접착되면서 고무의 彈力性으로 꽂잎이 上下로 벌어지게 되며 生花와 같은 立體的인 꽂모양이 形成되는데 反하여 이미 國內에 發布된 甲第1號증(日本 特許公報 多辨造花製造法)은 첫째, 고무판 2枚를 합쳐 그 속에 適當量의 空氣를 保有하게 하고 開口端部를 접착한 다음 이를 임의의 꽂모양의 形圖로 압착재단하면 동시에 고무의 접착성에 의하여 결단면이 서로 접착됨으로서 꽂잎 내부에 공기를 舍有한 多肉狀의 꽂모양이 形成되는 것으로兩者는 그 技術的인 製造方法이 相異하여 본건 특허는 新規性이 있는 것이라는趣旨에서 無効로 될수 없

다고 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이 판단하기 위한 過程으로 거친 證據取捨 및 實事認定關係를 記錄에 對照하여 精查 檢討하여 보면 適法하고 거기에 論旨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實事判斷을 遊脫하였거나 審理未盡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무판을 압착 결단하여 꽂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從來 公知 共用되어 온 방법과 같다 하더라도 본건 특허의 나머지 點과 綜合하여 보면 하나의 신규발명의 내용을 갖춘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공지 공용된 방법으로부터 지극히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는 通常의 技術에 不過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같은 趣旨의 원심결은 正當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上告를棄却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敗訴者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1976年 3月 23日

國 外 事 件

〈日 本〉

商標의 稱呼類似의 判斷基準

(東京高等裁判所 1973年 審決取消事件, 75. 3. 25. 判決)

1. 原 告: 비오헤루민製藥(株)

2. 被 告: 特許廳長官外 3名

3. 判決主文

原告의 請求를 棄却한다. 訴訟費用은 원고의 負擔으로 한다.

4. 判決要旨

本願商標와 引用登録商標의 稱呼類似는 音響工學上 音波의 波形, 單複의 差異는 있어도 商去來上 需要者사이에서 볼 수 있는 言語生活의 地域差, 年時差, 個人差가 있으므로 類似性을 否認할 수 없다하여 本件事案에서의 拒絕審決을 是認한 사례이다.

5. 事 實

① 當事者가 要求한 裁判

原告訴訟代理人은 『特許廳이 1972년 10월 17일 同廳 1970年 審判 10727號事件에 대하여 한 審決을 取消한다.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의로』 한다라는 판결을 요구하고 被告指定代理人은 主文 第1. 2項과 같은趣旨의 판결을 요구했다.

② 請求原因

가) 特許廳의 手續經緯

원고는 1964년 8월 24일 특히청에 대하여 別紙 第1(省略)記載의 상표以下 本願商標(하)에 대해 別紙 2(생략)의 登錄商標의 聯合商標로서 商標登録出願을 한 바 1970년 9월 30일 拒絕査定을 받았다. 그래서 원고는 동년 12월 11일 심판을 청구하고 동년 심판 10727호로서 審理되었으나 1972년 10월 17일 『本件審判 청구는 成立되지 않는다』는 심

결이 있어 그 謄本은 1971년 2월 14일 원고에게 送達되었다.

나) 審決理由의 要旨

本願商標는 고체體風으로 「ビオ」의 카다카나文字를 左橫書하고 그 下段에 併記하고 있으며 第1類 化學品(다른 類에 屬하는 것을 除外한다), 藥劑, 醫療補助品을 指定商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別紙 第3(생략)의 登錄第 444340號 商標(이하 引用登録商標라 함)는 고체體로서 「ビオ」의 카다카나文字를 縱書하여 된것이며 舊第1類 化學品, 藥劑 및 醫療補助品을 지정 상품으로 하는 것이나 본원 상 표와 比較하면 外觀上은 上記의構成에서 서로 區別될 수 있는 差異가 있다.

하지만 칭호상으로 본다면 본원 상표는 「ビオ」의 칭호가 發生하고 인용등록 상표로부터는 「ビオ」의 칭호가 생겨 서로가 2音으로 되므로 그 末尾의 「オ」를 共通으로 하여 順音이 「ビ」와 「ピ」의 音의 差가 있다해도 潤音과 半潤音의 微差에 不過하며 극히 近似한 음이므로 全體적으로 칭호할 때 兩者는 서로 엇갈릴 수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양자는 지정 상품도 서로 抵觸함이 明白하므로 觀念上 類否에 미치지 않으므로 본원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다) 審決을 取消하는 事由(省略)

本件審決이 本願商標와 引用登録商標가 稱呼上 類似하다고 한 判斷에 過誤는 없어原告의 주장을 이유가 없다.

① 頭音의 語感의 相違에 대하여 兩者的 頭音「ビ」「ピ」가 모두 兩唇破裂音이며 音元「i」를 갖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양자에는 標準의 音聲學上の 見地에서

보면原告가 주장하드시 發聲上의 強弱의 差異가 있음을 당연히 또 한 成立에도 틀림없는 甲 第9號證에 의하면 音響工學上原告의 主張과 같은 音波의 波形, 單複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된다. 그러나 商標에서 생기는 稱呼類似의 문제는 그 構成音上 對應하는 1音만의 비교로는 不足하며 구성음이 結合된 稱呼 全體로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해도 칭호전체로서 검토해도 商去來上 需要者들 사이에는 地域, 習俗, 生理 등이反映된 言語生活의 地域差, 年時差, 個人差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오는 轉訛, 發聲上의 混同, 誤傳, 錯覺도 예상되므로 「ビ」「ピ」 사이의 유사성을 부정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構成音數의 強弱과 相違音의 位置에 대하여

원고는 양자 모두가 第2音의 母音 「オ」에 比하여 「ビ」「ピ」가 어느것도 音元「i」를 수반하기 때문에 語頭高의 2音節語라고 주장하지만 액센트·인터네이션에 대하여는 지역차, 개인차, 연시차가 있으므로 兩語는 반드시 語頭高도 固定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語頭高라고 해도 原來가 前示와 같이 수요자들에 대하여는 音韻構成의 標準의 發聲聽取가 반드시 期待할 수 없으므로 그 때문에 바로 칭호전체로 서의 유사혼동을 부정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③ 觀念과의 關係에 대하여

本願商標에서의 「B10」은 성립에 이의가 있을 수 없는 甲第1101號證의 각 1~2에 의하면 「生」은 「生命」의 뜻을 갖는 接頭詞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日本에서는 또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서 日常, 一般에게 친숙되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點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 一中略—

이상으로 보아 원고의 本訴訟請

求는 이유가 없어棄却할수 밖에 없으므로訴訟費用의 부담에 대해行政訴訟法 및民事訴訟法을適用하여主文과 같이判決한다.

6. 解說

本判決趣旨에서 商標法의 商標類否判斷基準은 大審院 以來의 判例法立場을 承認하는 것이다. 즉 判例의 大勢는 使用主義의 또는 不正競爭的 考慮를 採用하여 混同防止에 비추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解釋하고 있다.

고 있다.

學說의 대부분은 이같은 판례법에 異見을 갖고 있으나 상표법은 상표로 사용하는者の信用을 지키는 동시에 수요자의 出處混同防止에 따른 利益을 配慮하게 된다.

이 두 가지의 調和는 수요자의 이익이 지켜짐으로써 사용을 예측하는 商標所有權者的 이익이 實現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입장은 대심원 아래의 판례에 따라 현재의 상표

법의 目的으로 보아妥當한 忠告을導出한 것이라 하겠다.

本判旨대로 引用登録標와의 類否判斷의 기준은 專門的인 音鄉音工學上의 音波나 音韻構成의 標準의 發聲聽取法은 아니며 去來上의 수요자들에게 기준을 둔 유사흔동의 有無에 있다고 함은 學說面에서도 首肯된다.

일 림

全經聯, 月刊「經協」을 「全經聯」으로改題

全國經濟人聯合會(會長: 金容完)는 創立 15個年을 맞아 10月號부터 會誌의 題號「經協」을 「全經聯」으로改題, 發行한다. 同誌는 지난 10月號로서 通卷 143號를 記錄하였다. ■

第一合織, 最優秀造景業體로

第2回 全國工業團地造景優秀業體選定大會에서 第一合織株式會社(代表: 孫尚模)가 최우수업체로 選定되었다. ■

第一毛織, 골덴텍스 로제트展

第一毛織株式會社(代表: 趙又同)

는 大韓服裝商工聯合會 · 大韓服裝技術協會의 共同後援으로 9月20日부터 10月6日까지 서울을 비롯하여 釜山 · 大邱 · 光州 · 大田 등지에서 골덴텍스 로제트展示會를 차례로 開催했다. ■

雙龍洋灰, 増產計劃 따른 保稅場設營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代表: 徐聖澤)는 現在의 生產能力 年間 320萬屯을 880만屯으로 늘리기 위한 先行措置로 墓湖稅關에 保稅建設場設營特許申請을 提出했다. ■

三養食品, 試食코너 선 보여

三養食品工業株式會社(代表: 全仲潤)는 「三養食品의 집」試食코너를 마련, 肉食用으로 기른 肥肉牛로 만든 비프스테이크과 비프가스를 販賣하고 있다. ■

韓國肥料, 無事故百萬人時 記錄

韓國肥料株式會社(代表: 尹泰浩)는 9月20日로 第5次 無事故 1百萬人時를 記錄했다. ■

韓國플라스틱, 社內教育訓練強化

韓國프라스틱工業株式會社(代表: 魏容海)는 社員의 經營資質向上을 위해 教育評價委員會를 構成, 教育強化와 노우하우의 運用 效率化等 技術教育을 擴大하고 있다. ■

◇ 「特協」의 役割 ◇

- 一. 工業所有權情報의 媒體
- 一. 新技術開發役軍의 養成
- 一. 國內外技術交流의 窓口化
- 一. 制度改善方向의 提示
- 一. 工業所有權運用效率化 誘導
- 一. 發明獎勵 및 實用化 促進